

의안번호	제 820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전원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일

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전원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일
발의자 : 전원표, 김기창, 서동학,
박우양, 연철흠, 황규철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생태관광 활성화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위원장의 책무, 회의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의 위촉 해제,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)
- 마. 도 대표 생태관광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8. 18. ~ 2021. 8. 23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태관광”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.

2. “도 대표 생태관광지역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관광자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 환경부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정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의 지정 또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방향
2.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3.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생태관광 자원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
5.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
6. 기관·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
7. 재원 조달 방안
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
2.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검토 및 육성 지원
3. 시·군 생태관광 컨설팅
4.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가. 충청북도의회 의원

나. 도 소속 공무원

다. 시민단체, 환경단체, 생태관광 관련 단체·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
라.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5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6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

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 등)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.

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2조(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) 도지사는 아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.

1.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2. 시장·군수가 요청하는 지역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41조(생태관광의 육성)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·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<개정 2013. 3. 22.>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(이하 “생태관광지역” 이라 한다)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<신설 2013. 3. 22.>.

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, 생태관광자원의 조사·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2.>.

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생태환경이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자연자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‘생태관광 활성화’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‘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’ 용역비(5년마다)
- ‘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’ 구성·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
-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

3. 관련조문

- 제5조(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)
- 제6조(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)
- 제11조(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), 제12조(수당 및 여비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2~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- 계획수립 : 외부용역 추진
- 위원회 운영 : 위원 10명, 연 2회 회의
- 지원사업
 - 지원건수 : 매년 2개소 신규 지정
 - 지원금액 :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역 지원사업* 준용(개소당 약90,000천원)
 - 보조율 : 기준보조율 30% 적용

* 생태관광지역 지정·육성

- 지원예산 : ('18) 100,000천원 ('19~21) 86,000천원 / 국 50% 도 15% 시군 35%

- 사업내용 :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가 컨설팅 등

나. 추계결과 : 2,730,000천원(도 840,000, 시군 1,890,000)

- ‘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’ 용역 : 1식 = 20,000천원
- ‘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’ 구성·운영 : 10명×연2회×100천원 =연2,000천원
-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·지원 : 1개소당 90,000천원

구분	계	2022	2023	2024	2025	2026	비고
지원 개소	30개소	2	4	6	8	10	
소요예산(천원)	2,700,000	180,000	360,000	540,000	720,000	900,000	

다. 재원 조달방안

- ‘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’ 용역 : 도비 100%
- ‘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’ 구성·운영 : 도비 100%
-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·지원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출		202,000	362,000	542,000	722,000	902,000	2,730,000
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		20,000	-	-	-	-	20,000
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	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·지원		180,000	360,000	540,000	720,000	900,000	2,700,000
재원 조달		202,000	362,000	542,000	722,000	902,000	2,730,000
자체 재원	소계	76,000	110,000	164,000	218,000	272,000	840,000
	용역, 위원회 (도 100%)	2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30,000
	지원사업 (도 30%)	54,000	108,000	162,000	216,000	270,000	810,000
사군비(70%)		126,000	252,000	378,000	504,000	630,000	1,890,000